# 무배당 중대한2대질병특별약관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이 특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 특약의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의 변경 내용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부터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2대질병진단자금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이하 “중대한 2대질병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함께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중대한 2대질병”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2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 “중대한 2대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중대한 뇌졸중”을 말합니다.

**제 11 조 (“중대한 2 대질병”의 진단확정)**

“중대한 2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2 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리조직검체,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중대한 2대질병 책임개시일” 이후에 처음으로 피보험자가 “중대한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중대한2대질병진단자금(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을 지급합니다.

중대한2대질병진단자금(1구좌기준)

| | |
|---|---|
|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50,000 원 |
|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이후 | 100,000 원 |

**제 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중대한2대질병진단자금 지급사유가 “중대한 2대질병 책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2대질병 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2대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2대질병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중대한 2대질병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중대한 2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일을 중대한 2대질병 진단확정일로보아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중대한2대질병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대한 2대질병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14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15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됩니다.
② 이 특약의 부가시 이 특약에 대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고의로 지체함으로 인하여 기타의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의 지연사유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등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하는 제3차 진료기관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제 19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 “중 대 한 2대 질 병 ”의 정 의

## 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당시 다음의 3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
2.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 분절, T 파, Q 파)가 새롭게 출현
3. CK-MB 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② 따라서, 상기 1~3 중 하나 또는 두개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 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 합니다.

③ 또한 상기 1~3 을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 검사,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 합니다.

④ 또한 안정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 합니다.

## Ⅱ.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평생동안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당시 새롭게 출현함은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 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 됩니다.

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합니다.

1.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2.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
3. 외상에 의한 뇌출혈
4.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5.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6.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의 폐쇄
7. 뇌동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

(별표 2)

# 보험금 등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 구 분 | 부 리 기 간 | 지 급 이 자 |
|---|---|---|
| 중대한 2 대질병 진단자금 (제 12 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 14 조 제 1 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 예정이율의 50%<br>1 년초과기간: 1% |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 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